

〈논문〉

##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 -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李哉協\*\* · 李準雄\*\*\* · 黃賢貞\*\*\*\*

### 요약

이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통한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제도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1,020명의 법률가에 대해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해서 분석과 평가를 수행했다. 로스쿨 1기부터 3기 졸업 법률가를 조사의 표적집단으로 삼고, 동시대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40기~43기) 법률가를 비교집단으로, 그리고 로스쿨 도입 이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39기 이전) 경력법률가를 평가집단으로 삼아 각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서 응답을 비교했다. 로스쿨 졸업 법률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인구사회적 배경, 법학 교육에 대한 평가, 직업적 평판 등을 동시대 사법연수원 수료 법률가와 비교분석했다.

로스쿨 출신 법률가와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의 성과 연령은 차이가 없었으며, 로스쿨 출신 법률가는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에 비해 출신학부, 학부전공, 경력 배경 등의 차원에서 모두 더욱 다양했다. 양 집단 간 가구소득,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에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로스쿨과 40기 이후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의 사회적 배경이 39기 이전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에 비해 체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세대 차이를 발견했다.

로스쿨 출신 법률가는 로스쿨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도 높고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나 부문별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반면 직무역량과 관련된 교육에 있어서는 연수원 집단이 로스쿨 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서 로스쿨에서 직업윤리와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경력법률가들은 전반적으로 연수원 집단을 로스쿨 집단보다 우수하게 평가하고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학연구소가 수행한 <2014 대한민국 법률직역의 구조와 법률가 의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곽명덕 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이 논문을 포함한 위 조사의 연구결과는 추후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제1저자.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제2저자.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제3저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가결과가 평가자와 피평가자와의 사회적 거리, 연령차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료평가의 결과를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밝혔다.

주제어: 법조사회학,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법률가, 다양성

## I. 서 론

국내에서 법률가<sup>1)</sup>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법률시장의 구조와 지형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변화했다. 국내 법률가의 수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증가했고,<sup>2)</sup> 2006년 5월에는 등록변호사의 수가 1만 명을 넘었다.<sup>3)</sup>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률가 교육제도는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1971년부터 시작된 사법연수원 교육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법학교육 및 법률가 양성제도의 큰 틀을 이루어 왔다.<sup>4)</sup>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법률가 양성의 패러다임은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했다.<sup>5)</sup> 국가가 운영하는 단일한 교육기관에서 수련 받았던 법률가들은 이제 다수의 서로 다른 전문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고 법조계로 진출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의 요점은 ‘다양성’, ‘전문성’, ‘국제경쟁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사회의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조인’이라는 용어를 공식화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법률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실제에서도 ‘법률가’와 ‘법조인’은 혼용되어 쓰이고 있을 뿐 아니라 대체적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어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는 법전문가의 모습을 포착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논의로는 한인섭, “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인가”,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박영사, 2000), 5면; 신평, “법조윤리, 어떻게 가르칠까?”, **법학논총**, 제28집(2008), 2-4면; 강희원, “「법률가학」으로서의 법조윤리: 「법률가학」의 이론적 정초를 위하여”, **경희법학**, 제48권 제2호(2013), 165-167면 참조.

2) 1981년에는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이 300명으로 증원되고, 1996년에는 500명, 2000년에는 1,000명으로 증원되었다.

3) 서울경제, “대한변협 등록 변호사 2만명 돌파”(2014. 9. 24.자).

4)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전의 법학교육 및 법률가양성제도의 개관은 이국운, “한국 법조인양성제도의 역사 - 로스쿨 제도 이전”, **저스티스**, 제146-2호(2015) 참조.

5) 김창록, **로스쿨을 주장하다**(유니스토리, 2013).

다양한 수준에서 급증하는 법률서비스 수요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변화하는 국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여 우리사회의 법치주의에 기여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했다.<sup>6)</sup>

2012년 최초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률가가 처음으로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했다. 2014년 9월에는 등록 법률가 수가 2만 명을 넘었고,<sup>7)</sup>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6천여 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률가가 배출되었다. 조만간 국내 법률시장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률가들이 다수를 형성하게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울러 2011년부터 법률시장이 개방되어 외국계 로펌들이 한국에 진입하면서<sup>8)</sup> 국내 법률사무소들과 경쟁관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법률가들의 역할, 활동영역, 경력의 이동 등에 걸쳐 적지 않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과거 어느 때에도 최근 상황과 같이 단기간에 법률가 집단의 변화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법률가양성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화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변화에 대한 경험적인 관찰을 통해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의 취지가 실현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질문에 경험적 자료에 기초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률가는 과거의 법률가와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즉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률가의 출신배경, 의식, 신념, 경력지향성은 이전의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 같은가 다른가,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새로운 법률가 집단을 새로운 방식으로 충실하게 교육하고 있는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률가들은 법률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등과 같은 기초적 질문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법률가 양성제도의 이행과정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 ‘돈스쿨’,<sup>9)</sup> ‘현대판 음서제’,<sup>10)</sup> ‘자질이 부족한 법률가 양성’<sup>11)</sup>

6) 김창록, “한국 로스쿨의 의의와 과제: ‘로스쿨 시스템’을 로스쿨답게 만들어야”, **저스티스**, 제146-2호(2015), 198쪽.

7) 서울경제, “대한변협 등록 변호사 2만명 돌파”(2014. 9. 24.자).

8) 한국-EU FTA의 발효로 시작된 국내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해, 2012년 7월 19일 첫 외국 법자문법률사무소가 설립되었고, 2014년 8월 현재 21개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등록되었다.

9) 응시자격에 제한이 거의 없는 사법시험 제도와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학비가 비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돈 많고 집안 좋은’ 사람들만 법률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개천에서 용나는’ 기회를 원천적

등과 같은 비판적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평가 자체가 과연 실제적인 것인지 경험적 증거에 기초해서 평가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법률가 직업에 대한 경험적 자료에 의거한 조사 및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sup>12)</sup> 법률가라는 전문직역은 원래 연구 대상으로서 접근하기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의 법률가집단이 유난히 동질적이고 폐쇄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는 매우 어려웠다.<sup>13)</sup>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몇몇 언론기관이나 국회의원실에서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입수한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법률사무소 취업자 등의 자료를 가지고 발표된 사례들이 있다.<sup>14)</sup> 아울러 제도도입 초기, 도입 후 몇 년 동안의 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조사가 시도되기도 했다.<sup>15)</sup>

---

으로 봉쇄한다는 주장이다.

- 10) 유력 정치인, 법관과 법학 교수, 대기업과 유수의 금융기관 고위 임원의 자녀들이 특혜를 받아 로스쿨에 입학했고, 이들 중 대부분이 대형로펌에 취직했다는 것들이 현대판 음서제의 주요 근거들이다.
- 11)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3년간의 법학 교육기간이 너무 짧고, 또한 높은 합격률의 변호사 시험을 치른 로스쿨 출신 법률가들이 사법연수원 출신에 비해 실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이다.
- 12) 한국의 법조직역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이용한 법사회학적 연구로는 김도현, **한국의 소송과 법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김두식,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창비, 2009); 이국운, **법률가의 탄생: 사법불신의 기원을 찾아서**(후마니타스, 2012); 이준석,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직업선택 변화와 그 원인: 관·검사 선호의 하락과 중대형로펌 선호 현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2호(2013) 참조.
- 13)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기존자료를 활용해 <2010 변호사백서>를 발간한 사례가 유일하다. 그러나 체계적 조사방법에 의한 조사가 아니었고, 설문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응답자 수도 100여 명에 지나지 않아 일반화에 문제가 많다.
- 14) 서울경제, “기업관계자 70%, 로스쿨 기대 안해...사시출신 뽑을 것”(2011. 11. 9.자); 중앙일보, “전국 명문대 로스쿨생, 사는 집 평당 가격이...”(2012. 4. 11.자); 주간동아, “로스쿨 = ‘돈스쿨’ 아우성”(2014. 3. 31.자); 법률신문, “<12대 로펌 전수조사> 대형로펌 신입, ‘SKY 쏠림’ 격화”(2015. 3. 19.자).
- 15) 한상희, “법률서비스의 수급상황과 전망, 그것이 로스쿨에 미치는 영향”, **일감법학**, 제15권(2009); 이중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의 실태와 과제”,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2권(2011); 김제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의 진로와 제도개선 방안”,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3권(2012); 김호정,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사회진출 양상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결정”, **외법논집**, 제37권 제4호(2013); 김용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과 법조양성시스템 중간점검”, **저스티스**, 제120호(2010); 이용구,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 **저스티스**, 제124호(2011); 송기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법과사회**, 제45호(2013).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 문헌들은 엄밀한 사회과학적 조사방법에 따라 수행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률가 집단에 대해 입체적인 분석을 하기에는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의 척박한 연구현실과 제한된 연구성과와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법률가 직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sup>16)</sup> 대표적으로 시카고 지역 변호사들을 상대로 존 하인즈와 동료들(John Heinz *et al.*)이 1975년과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수행한 연구(이하 ‘시카고 변호사 연구’)가 대표적이다.<sup>17)</sup> 우리 연구와 유사한 취지의 미국 연구 사례로 미국 법조지역연구연합(National Association for Law Placement)<sup>18)</sup>과 미국변호사재단(American Bar Foundation)<sup>19)</sup>이 공동수행한 『로스쿨 졸업 이후』(After the JD: 이하 ‘AJD’) 연구 프로젝트가 있다. 이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는 2000년 로스쿨을 졸업한 5,000여 명의 법률가들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것으로, 제1주기(2002년~2003년)와 제2주기(2007년~2008년), 제3주기(2012년)에 코호트(cohort) 그룹을 모집단으로 미국 전역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과 면접을 통하여 자료 수집을 했다.<sup>20)</sup> 경력 2년~3년차 초임 법률가들의 인구학적 구성, 근무지, 근무환경, 급여, 만족도, 이직, 성차 및 인종차에 따른 영향, 로스쿨 경험과의 관련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후 매 5년마다 이에 대한

16) 미국의 법조지역에 대한 그동안의 법사회학적 연구성과들에 대한 평가로는 Sida Liu, “The Legal Profession as a Social Process: A Theory on Lawyers and Globalization”, *Law and Social Inquiry*, Vol. 38, No. 3 (2013) 참조.

17) John Heinz and Laumann, *Chicago Lawyers: The Social Structure of the Bar* (revised ed.)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94); John Heinz, Robert Nelson, Sandefur and Laumann, *Urban Lawyers: The New Social Structure of the Ba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시카고 법률가 연구’의 주된 골자는 미국 법조지역 내에 성별, 인종, 근무지에 따른 계층화가 뚜렷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18) 1971년 설립된 기관으로 미국 전역의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 현황을 조사하고, 법조지역 확대 및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9)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가 1952년에 설립한 연구기관으로서 법학과 인접과학 간의 여러 가지 학술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 첫 번째 주기의 결과는 The NALP Foundation for Law Career Research and Education and the American Bar Foundation, *After the JD: First Results of a National Study of Legal Careers*, 2004 (‘AJD I’) 참조. 두 번째 주기의 결과는 *After the JD II: Second Results from a National Study of Legal Careers*, The American Bar Foundation and the NALP Foundation for Law Career Research and Education, 2009 (‘AJD II’) 참조. 세 번째 주기의 결과는 *After the JD III: Third Results from a National Study of Legal Careers*, The American Bar Foundation and the NALP Foundation for Law Career Research and Education, 2014 (‘AJD III’) 참조.

비교를 통해 법조지역의 양태와 변화를 살펴보았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률가들이 배출되기 시작한지 3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우리의 ‘새로운’ 법률가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해 가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어 미국의 AJD 연구는 매우 시사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법학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로스쿨입학위원회(Law School Admission Council: LSAC)나 미국로스쿨연합회(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 AALS)와 같은 기관에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특히 법학교육 수요자인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는 미국 인디애나 대학 로스쿨의 ‘로스쿨학생 활동 설문조사’(Law Schoo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LSSSE)가 주목할 만하다.<sup>21)</sup> 이 조사는 법학교육과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을 증진시키고 로스쿨의 교과과정, 학생행정 등 학교운영에 대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반영하기 위해 행해지고 있다. 이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지 7년째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로스쿨에 적용해서 비교해 볼 가치가 있다.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행실적과 관련한 논의에서 실제 재학생과 졸업생이 어떻게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교육의 여러 측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일본변호사협회는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1980년부터 매 10년 간 전국 조사를 실시했다. 일본은 2004년부터 도입된 로스쿨 제도에 따라 신사법시험을 시행하면서 구사법시험과 병행으로 구제도와 신제도에 따라 각각 배출된 법률가 집단이 활약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특히 법사회학적 연구를 주도하는 미야자와 세츠오(宮澤節生) 교수 연구팀은 각각 2007년, 2011년, 2014년에 설문조사를 수행해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미야자와 연구진은 미국 AJD와 시카고 변호사 연구를 모델로 일본 변호사 지역의 사회적 구조, 즉 법률가 지역 내에서의 전문화, 계층화, 출신학교의 영향 등을 중·장기적으로 살펴보고, 구사법시험과 신사법시험을 통한 법률가들의 직업선택과 경력궤적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려 했다.<sup>22)</sup> 그러나 양 법률가 집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비교가 엄밀하게 이루어지지는

21) 이 조사는 인디애나 대학 로스쿨에서 지난 10년간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 조사에는 미국전역에서 89개의 로스쿨 및 캐나다, 호주의 로스쿨이 참여했다. Law Schoo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Looking Ahead: Assessment in Legal Education, Annual Results 2014.

22) Setsuo Miyazawa, Atsushi Bushimata, Keiichi Ageishi, Akira Jujimoto, Rikiya Kuboyama, and Kyoko Ishida, “Stratification or Diversification? – 2011 Survey of Young Lawyers

않았다. 한국보다 이르게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험적 연구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지만, 신구세대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인식의 차이를 검토하지 않은 것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미국의 AJD와 LSSSE 그리고 일본의 변호사 조사연구를 참고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등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제도의 변혁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해서 분석과 평가를 수행했다.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미국의 법학교육을 모델로 삼았지만,<sup>23)</sup> 제도의 도입배경, 실제 운용상황은 매우 다르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미국의 로스쿨과는 달리 우리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시험에 의한 법조인양성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고, 2017년까지 양 제도가 과도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뚜렷한 목적을 위해 도입된 것이니 만큼 그러한 제도 도입의 취지가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를 설계함에 있어 현시점에서의 우리나라 법조직역의 정확한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법시험 제도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 배출된 법률가 집단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법률가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하여 직접 그들에게 사회경제적 배경과 법률교육에 대한 평가를 질문함으로써 일차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그로부터 제도적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국내 최초로 법률가의 직업경로와 업무환경, 만족도, 법의식, 법학전문대학원 및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들의 비교 등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2014 대한민국 법률직역의 구조와 법률가 의식조사>를 수행했다. 이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방대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은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우선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들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법학교육제도에 대한 평가, 양집단 법률가에 관한 평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그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sup>24)</sup>

in Japan”, in Setsuo Miyazawa et al. (eds.), *East Asia's Renewed Respect for the Rule of Law in the 21st Century: The Future of Legal and Judicial Landscapes in East Asia* (Brill/Nijhoff, 2015), pp. 30-46.

23) 미국의 법학교육제도에 대해서는 이재협, “미국의 법학교육: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미국학**, 제31권 제2호(2008) 참조.

24) 법률가들의 직업경로, 업무환경, 만족도, 법의식 등에 관하여서는 다른 지면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 II.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로스쿨 1기부터 3기 출신 법률가의 인구학적 구성, 출신학부 및 전공, 학부졸업 후 로스쿨 입학 소요기간, 학자금 조달 방법 등에 대한 포괄적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로스쿨 출신 법률가가 동시대 사법연수원 졸업 법률가와 비교해서 성, 연령, 출신학부, 전공 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지 검토하는 것이 이 연구의 첫 번째 문제이다. 이를 통해 로스쿨 출신 법률가의 인구사회적 다양성이나 교육적 배경의 다양성 등 구성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핵심 과제는 최근 로스쿨 제도 자체에 대해 제기되었던 주장에 대해 조사 자료를 근거로 답변하는 데 있다. 최근까지 로스쿨 제도의 정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로스쿨은 돈스쿨인가?’, ‘졸업생의 로스쿨 교육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일반 변호사들은 로스쿨 출신 법률가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등 논란거리가 제기된 바 있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이 질문에 대한 체계적 답변을 제시하고 그 답변이 갖는 함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로스쿨 졸업 법률가와 동시대 사법연수원 졸업 법률가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과연 로스쿨 출신 법률가가 경제적으로 더욱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나오는지 알아보려는 데 있다. 흔히 특정 직군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구소득, 부모의 사회경제적 계층, 부모의 학력 등과 같은 변수를 사용한다. 이런 변수들을 기준을 볼 때, 로스쿨 졸업 법률가가 동시대 사법연수원 졸업 법률가에 비해 가구소득이 높거나, 부모의 직업이 좋거나, 학력이 높은지 검토하겠다. 특히 가족과 친지 중에 법률가가 있는지 여부도 측정해서 비교해보겠다.

셋째, 로스쿨 교육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겠다. 로스쿨 출신 법률가들이 자신이 졸업한 로스쿨의 교육과정, 교과분야, 과외활동 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검토할 것이다. 로스쿨 졸업 법률가의 로스쿨에 대한 평가를 맥락화하기 위해 동시대 사법연수원 졸업 법률가가 연수원 교육에 대해 평가한 결과도 비교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해야 한다. 교육제도 간 비교 평가를 통해서 로스쿨 졸업자들이 로스쿨 교육에 대해 내린 평가가 어떤 함의를 갖는지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로스쿨 출신들은 법률 시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탐색한다. 이를 위해 경력변호사에게 로스쿨 출신 법률가와 동시대 사법연수원 졸업 법률가를 평가



하는 문항을 제시해서 답변을 얻었다. 조직 내 활동, 법률가로서 역량, 인성 및 태도 등 다양한 문항을 제시했다. 특히 경력변호사는 자신의 직장에서 함께 업무를 수행한 로스쿨 출신 법률가 또는 사업연수원 졸업 법률가와 그렇지 않은 법률가를 비교해서 평가하도록 했다. 이를 이용해서 로스쿨 출신 법률가와 사업연수원 졸업 법률가를 비교하는 것은 물론 업무와 관련해서 직접 경험한 법률가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교차해서 비교평가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법률가 시장에서 로스쿨 출신 법률가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연구방법의 특성

한국의 전체 법률가를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성하는 연구 설계를 적용했다. 첫 번째 집단은 본 연구의 표적집단으로 로스쿨 1기부터 3기(2009년~2011년 입학) 출신 법률가이다. 두 번째 집단은 표적집단과 비교를 위해 구성한 비교집단으로, 표적집단과 동시대에 사법연수원 교육을 받은 법률가(사법연수원 2009년~2012년 입소자 혹은 사법연수원 40~43기)이다.<sup>25)</sup> 세 번째는 사법연수원 2008년 이전 입소(사법연수원 39기 이전)의 일반 경력변호사들로 평가 집단이라 칭한다. 이 세 법률가 집단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각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얻기 위해 법률신문사가 발행한 『한국법조인대관』을 표집틀(sampling frame)로 이용했다. 『한국법조인대관』에 등재되지 않은 법률가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등재변호사집단이 세 모집단을 충분히 포괄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사용해서 표본을 추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률가로 한정했다.<sup>26)</sup>

표본추출은 무작위표집의 일종인 체계적 표집방법(systematic sampling)을 사용했다. 이는 표집틀에서 표집대상자의 목록을 구한 후, 목표 표본수로 나눈 수의 간격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표적집단, 즉 로스쿨 졸업 법률가의 경우를 보면, 표집틀에 속한 자는 모두 1,262명이었는데, 이 중 300명을 동일한 확률로 추출해서 조사하려 한다면 전체 1,262명을 가나다 순으로 정렬한 후 4명 간격으로

25) 로스쿨(3년)과 사법연수원(2년)의 수학연한의 차이로 인해 2009년 입학/입소로부터 2014년 졸업/수료에 이르는 집단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26)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간한 <2010 변호사 백서>에 의하면, 2009년 말 현재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변호사의 수는 전체 9,612명 중 8,440명(87.8%)에 달했다. 따라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지역을 7개로 한정하더라도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1명씩 조사를 성공해야 한다. 실제로는 응답거절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 좁은 간격을 정해 1차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 조사거절자는 재접촉을 시도하고, 조사 중단자는 누락으로 처리하며, 재접촉 후 최종 응답거절자는 미리 정한 응답자대체 규칙에 따라 다음 응답자로 대체하면서 표집했다. 예상응답률 약 20%를 목표로 일차 5,026명에게 전화로 설문을 요청했으며, 재접촉 포함 최초 표본에서 응답을 완료한 법률가는 719명, 접촉 후 응답을 완료한 법률가는 539명으로 응답률 10.8%였다. 집단별 응답률은 표적집단(로스쿨 졸업 법률가) 20.7%, 비교집단(연수원 졸업 법률가) 15.4%, 평가집단(경력법률가) 4.2%였다. 목표 표본수를 달성하기 위해 표집틀 내에서 다음 순번 대상자에게 접촉하는 방식으로 응답자 대체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 표적집단 308명, 비교집단 300명, 평가집단 412명 등, 총 1,020명을 조사 완료했다.

면접방법은 면대면 또는 온라인 조사였다. 전화로 면접신청을 한 후, 사무실 등 직접 만나서 설문에 응답하겠다는 법률가에게는 면대면으로 조사를 수행했으며, 직접 만날 수 없다는 법률가에게는 이메일로 조사링크를 보낸 후 링크에 연결된

<표 1>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모집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적집단(로스쿨): 로스쿨 졸업 법률가(1~3기). 2009년 입학 이후</li> <li>• 비교집단(연수원): 연수원 졸업 법률가(40~43기). 2009년 입소 이후</li> <li>• 평가집단(경력법률가): 일반 법률가(사법연수원 39기 이전)</li> </ul>
조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및 6대 광역시</li> </ul>
최종표본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적집단 1,262명 중 체계적 표집으로 최종 308명 조사</li> <li>• 비교집단 1,744명 중 체계적 표집으로 최종 300명 조사</li> <li>• 표적집단 10,937명 중 체계적 표집으로 최종 412명 조사</li> </ul>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신문 『한국법조인대관』을 표집틀로 사용</li> <li>• 체계적 표집으로 면접대상 확보 후 면대면 조사 및 온라인 조사(Web-survey) 병행</li> </ul>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근로현황</li> <li>•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경험 및 평가</li> <li>• 법률가 의식 및 신념</li> <li>•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및 2009년 이후 입소 사법연수원 수료생 평가</li> <li>• 사회경제적 배경</li> </ul>
자료수집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각 30쪽 내외</li> </ul>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8월 11일~10월 15일(약 2개월간)</li> </ul>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입소스코리아</li> </ul>

설문지에 답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조사기간은 2014년 8월부터 2달이 소요되었으며, 실사는 조사전문회사인 입소스코리아에서 담당했다.

설문지는 구조화된 질문으로 약 30쪽에 달하는 분량이었으며, 세 조사대상 집단에 공통적인 질문과 각 집단에 고유한 질문으로 구성된다. 집단에 고유한 질문의 사례를 들자면, 표적집단인 로스쿨 졸업 법률가와 비교집단인 동시대 사법연수원 졸업 법률가에 대해서 각각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교육을 평가하는 문항을 담은 것이 있다. 평가집단인 일반 경력변호사에게는 로스쿨 출신 법률가와 사법연수원 졸업 법률가를 비교 평가하는 문항을 포함했다. 모든 집단에 공통적으로 현 직장과 업무, 직장의 고용현황 등을 물었으며, 법률가로서 의식과 신념, 그리고 사회경제적 배경 등도 공통적으로 질문해서 답변을 얻었다.

<표 2> 조사내용

파트	로스쿨	사법연수원	경력법률가
A. 현재 직장 및 고용현황	○	○	○
B.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교육	○	-	-
C. 사법연수원 40~43기 법률가의 교육	-	○	-
D. 일반 법률가 교육, 경력 및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 2009년 이후 입소 사법연수원 수료생 평가	-	-	○
E. 의식과 신념	○	○	○
F. 배경	○	○	○

### 3. 응답자 특성

세 집단으로 구분되어진 법률가들 중 최종적으로 확정된 표본의 법조지역은 변호사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96.8%). 표본에서 검사(0.6%)와 판사(2.6%)의 비중이 매우 적은 것은 그들의 응답률이 매우 낮았음을 나타낸다. 특히 로스쿨 집단의 경우 아직 판사로 임용되지 않았고, 응답한 1명은 재판연구원이었다. 응답자 표본의 대부분이 변호사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나, 본 조사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비교 분석이 아니라 로스쿨 집단과 사법연수원 집단의 비교에 있고 또한 현재 대다수의 초임 법률가들이 변호사로 법조경력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응답자의 지역분포의 차이가 분석적 타당성을 심하게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sup>27)</sup>

<표 3> 표집틀과 표본비교

	로스쿨집단		연수원집단		경력법률가집단		전체		
	표집틀	표본	표집틀	표본	표집틀	표본	표집틀	표본	
전체	1,262	308	1,744	300	10,937	412	13,943	1020	
	9.1%	30.2%	12.5%	29.4%	78.4%	40.4%			
재 직 구 분	1. 검사	28	1	63	2	927	3	1,018	6
		2.2%	0.3%	3.6%	0.7%	8.5%	0.7%	7.3%	0.6%
	2. 판사	8	3	180	10	1,559	14	1,747	27
		0.6%	1.0%	10.3%	3.3%	14.3%	3.4%	12.5%	2.6%
	3. 변호사	1,183	304	1,489	288	8,326	395	10,998	987
		93.7%	98.7%	85.4%	96.0%	76.1%	95.9%	78.9%	96.8%
	4. 기타	43	-	12	-	125	-	180	-
		3.4%	0.0%	0.7%	0.0%	1.1%	0.0%	1.3%	0.0%
지 역	1. 서울	923	265	1,470	271	8,664	362	11,057	898
		87.3%	86.0%	84.3%	90.3%	79.2%	87.9%	80.5%	88.0%
	2. 부산	37	13	69	5	590	17	696	35
		3.5%	4.2%	4.0%	1.7%	5.4%	4.1%	5.1%	3.4%
	3. 대구	18	6	48	5	437	9	503	20
		1.7%	1.9%	2.8%	1.7%	4.0%	2.2%	3.7%	2.0%
	4. 인천	18	7	55	8	435	7	508	22
		1.7%	2.3%	3.2%	2.7%	4.0%	1.7%	3.7%	2.2%
	5. 광주	28	10	43	5	312	7	383	22
		2.7%	3.2%	2.5%	1.7%	2.9%	1.7%	2.8%	2.2%
	6. 대전	23	5	33	5	337	4	393	14
		2.2%	1.6%	1.9%	1.7%	3.1%	1.0%	2.9%	1.4%
	7. 울산	10	2	26	1	162	6	198	9
		1.0%	0.6%	1.5%	0.3%	1.5%	1.5%	1.4%	0.9%
	8. 미상	205	-	-	-	-	-	205	-

전체 1,020명의 응답자 중 서울지역의 응답자는 88%이었고, 이는 모집단 중 서울

27) 물론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응답자 편향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조사를 통해 판사와 검사들은 법원과 검찰 소속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해 외부에서 의뢰한 무작위 설문조사에 잘 응하지 않는 성향을 보인다는 관찰을 얻었다. 보다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서 양 기관에서 협조를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79.3%)보다 높았다. 로스쿨 집단의 경우 서울지역 응답자의 비중은 모집단과 표본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연수원 집단과 경력법률가 집단의 경우 서울지역에 소재한 법률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하위 집단의 응답자의 서울지역 편중이 있지만,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서울집중 현상을 감안하면 이 때문에 지역적 편포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력유형별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경력법률가 집단의 남성 응답자 비율이 81.6%로 로스쿨 집단과 연수원 집단의 남성 응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평균 연령은 경력법률가 집단이 42.8세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연수원 집단(34.1세)과 로스쿨 집단(33.9세)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직장을 살펴보면, 국내로펌에 재직 중인 응답자가 60% 전후로 나타난 가운데, 단독개업은 경력법률가 집단(12.1%),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은 로스쿨 집단(19.2%)에서 재직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 경력유형별 응답자 속성

구분(비율%)		경력 유형		
		로스쿨 집단 308명	연수원집단 300명	경력변호사 412명
성별	남자	59.7%	54.0%	81.6%
	여자	40.3%	46.0%	18.4%
연령	20대	9.1%	7.3%	-
	30~34세	52.6%	57.0%	13.1%
	35~39세	29.9%	27.7%	27.9%
	40~44세	8.1%	6.7%	25.5%
	45~49세	0.3%	1.0%	14.1%
	50대 이상	-	0.3%	19.4%
	평균(세)	33.9%	34.1%	42.8%
직장 구분 (현재)	단독개업	10.1%	8.3%	12.1%
	국내로펌	60.4%	59.0%	61.7%
	법원·검찰	1.0%	3.7%	4.1%
	공기업 및 공공기관	5.2%	4.0%	4.6%
	일반기업 및 금융권	19.2%	18.0%	13.8%
	기타	4.2%	7.0%	3.6%

응답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직장은 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 광장, 화우 등 대형로펌이 많았다. 상위 5대 로펌에 속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17.9%였다. 대형 로펌 이외 기타 응답자는 중소 로펌, 상장회사 재직자 및 개인 법률사무소 재직자가 대부분이었고, 공공기관 소속(지자체, 공기업 등) 응답자의 응답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표본의 분포도 현재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지형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8)</sup>

로스쿨 집단의 경우 25개 로스쿨 중 24개 학교 출신이 응답하였고, 각 로스쿨 당 최소 3명 이상이 응답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높여주었다. 소재지별로는 서울과 지방이 각각 62%, 38%였고, 응답자 수가 많은 로스쿨은 서울대(17.21%), 성균관대(7.47%) 이화여대(7.14%), 경북대(5.84%), 전남대(5.84%), 고려대(5.52%), 연세대(5.52%), 부산대(5.52%) 순이었다.

### III. 주요 결과

#### 1. 로스쿨 출신 법률가의 구성적 특징

##### (1) 성, 연령, 로스쿨 준비 기간

로스쿨 법률가와 사법연수원 법률가의 여성비율은 각 40%와 46%로 사법연수원 졸업 법률가의 여성비율이 약간 많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chi^2 = 2.04$ ,  $df = 1$ ,  $p = 0.15$ ). 다만 경력법률가 집단의 여성비율 18%에 비교해 보면, 로스쿨이든 사법연수원이든 젊은 법률가의 여성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chi^2 = 69.58$ ,  $df = 2$ ,  $p < 0.001$ ).<sup>29)</sup>

28) 한국 법률시장에서 차지하는 상위 5~6위 대형로펌들의 변호사 수와 매출규모는 압도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홍성수, “로펌의 성장과 변호사윤리의 변화: 개인윤리에서 조직윤리로, 공익활동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법과사회**, 제41권(2011), 156-158면 참조. 대한변협의 회원현황에 따르면 2015년 3월말 현재 법무법인이나 법무법인(유한)은 모두 876개이고, 여기에 고용된 변호사의 숫자는 8,392명으로 전체 개업변호사 16,340명 중 절반을 넘었다(<http://www.koreanbar.or.kr/info/info07.asp>, 2015년 6월 7일 방문). 본 조사 표본 중 로펌에 고용된 응답자 비중은 60% 정도로 실제의 모습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29) 여성법률가의 증가에 관해서는 김두식, “법학전문대학원 3년의 시점에서 바라본 여성 법조인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젠더법학**, 제3권 제2호(2011) 참조.

로스쿨 집단과 연수원 집단의 평균연령은 33.9세와 34.1세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0.67, df = 606, p = 0.50$ ). 이 두 집단은 같은 시기에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에서 법률가 양성교육을 받은 법률가이기에 학부졸업 후 법률가가 되기 위한 소요기간이 사실상 차이가 없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다는 것을 확인했다.

학부졸업 후 로스쿨 입학과 사법연수원 입소까지 걸린 소요기간은 평균 2.7년(로스쿨), 3.3년(연수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 발견은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 교육의 도입으로 법학 수학연한이 불필요하게 연장되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대다수의 사법시험 출신 법률가들이 4년간의 학부기간을 마치고도 적지 않은 수험준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로스쿨 출신 법률가에 비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렸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사법시험 합격자 평균연령이 1990년 중반 이후 4세가량 상승하였다는 보고와도 일치한다.<sup>30)</sup>

로스쿨 졸업 법률가의 경우 학부졸업 후 공백 기간이 없거나 1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지만, 4~5년과 6~8년이라는 응답도 각각 15% 이상 나타나 학사 취득 후 법률가의 길에 들어서기 위한 준비기간이 긴 응답자들도 상당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직장에서 근무했다(46.7%)고 응답했다. 대학원 진학(17.4%)을 했다는 응답자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수원 집단은 학부졸업 후 대부분 사법시험 준비(73.1%)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률 전문교육을 받기 전 직업을 보면 로스쿨 출신 법률가가 사법연수원 졸업 법률가에 비해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학위 소유여부를 보면, 석사학위 이상 소지 비중이 로스쿨 집단이 연수원 집단에 비해 높았다. 학위의 분야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법학분야 학위가 많았지만 로스쿨 집단에서는 공학계열 학위 소유자도 상당비율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로스쿨 출신 법률가의 출신에 따른 구성적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로스쿨 체제 덕분에 다양한 경력을 가진 자들이 법률가의 길로 들어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0) 김두열,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법원정책, 형사정책, 법조인력정책의 실증분석**(해남, 2011).

&lt;표 5&gt; 로스쿨 입학 및 사법연수원 입소 전 활동

	로스쿨	사법연수원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또는 사법시험 준비	7.1%	73.1%	41.2%
군 복무	8.7%	10.2%	9.4%
가사 도움	0.5%	1.5%	1.0%
직장 근무	46.7%	6.6%	26.0%
법학전문대학원 이외의 대학원 진학	17.4%	4.6%	10.8%
기타	19.6%	4.1%	11.5%

## (2) 출신학부 및 전공의 다양성

출신학부를 기본으로 보면, 로스쿨 집단과 연수원 집단 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우선 출신학부가 지방대인 법률가의 비중이 로스쿨 집단(17.4%)에서 두드러지게 늘었다. 연수원 집단(10.5%)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며 경력법률가 집단(7.3%)보다는 2배 이상 늘어났다( $\chi^2 = 13.30$ ,  $df = 2$ ,  $p < 0.01$ ). 출신학부가 서울대학교인 법률가의 비중은 로스쿨 및 연수원 졸업 법률가 모두 경력법률가(55.8%)에 비해 감소하였고(로스쿨 31.5%, 연수원 35.3%;  $\chi^2 = 51.52$ ,  $df = 2$ ,  $p < 0.001$ ), 소위 서연고 학부출신의 법률가 비중 역시 로스쿨(55.5%) 및 연수원(61.6%) 집단 법률가 모두 경력법률가(77.2%) 집단보다 적었다( $\chi^2 = 40.21$ ,  $df = 2$ ,  $p < 0.001$ ).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통해 법률가의 출신학교 다양성이 획기적으로 신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31)</sup>

&lt;표 6&gt; 출신 학부 구성

	로스쿨	연수원	경력법률가	전체
서울대	31.5%	35.3%	55.8%	42.5%
서연고	55.5%	61.6%	77.2%	66.1%
지방대	17.4%	10.5%	7.3%	10.6%
전체	308	300	412	100%

학부전공의 경우 로스쿨 출신 법률가는 연수원 및 경력법률가 집단에 비해 매우

31)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비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의 인원 규모와 배출 대학수가 모두 증가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박근용,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운영 현황: 학생선발의 다양성과 장학제도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제45호(2013), 475쪽.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로스쿨 출신의 경우 비법학 전공자의 비중이 60%에 달했다. 이는 약 80% 정도가 법학전공인 연수원과 경력법률가 집단과 확연히 비교된다. 이런 차이는 법학전공 합격자의 수를 제한하는 법률규정,<sup>32)</sup> 그리고 로스쿨 설치 대학교에서의 법학 학부전공 폐지<sup>33)</sup>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sup>34)</sup> 전공계열 중 자연과학, 공학계열 전공자의 수가 매우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더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해 법률직역으로 진출할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표 7> 학부 전공 구성

	로스쿨	연수원	경력법률가	전체
법학	39.3%	79.7%	79.9%	67.5%
인문/사회	40.3%	16.3%	14.6%	22.8%
자연/공학	17.9%	2.7%	4.4%	7.9%
예체능 및 기타	2.6%	1.3%	1.2%	1.7%
전체	308	300	412	100%

## 2. 법률가의 사회경제적 배경: 로스쿨은 ‘돈스쿨’인가?

### (1) 가구소득

로스쿨 졸업 법률가는 사법연수원 졸업 법률가에 비해 부유한 집안 출신인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졸업 법률가의 가구소득은 월평균 1천 63만 원으로 사법연수원 졸업 법률가 1천 89만 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 = -0.67, df = 484.52, p = 0.51$ ). 다만 두 집단 모두 월평균 가구소득이 1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의 상위소득 계층에 속함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로스쿨이든 사법연수원이든 모두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구 출신이며, 두 집단 간 차이는 없다. 경력변호사 집단의 가구소득은 1천 464만

3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3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34) 전수조사에 기반한 한 조사결과도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2009~2013년)의 비법학사 비중은 평균 53.7%로, 사법시험 합격자(2004~2008년)의 비법학사 비중은 평균 23.6%로 나타났다. 박근용, *supra* note 31, 476-477쪽.

원으로 표적집단과 비교집단보다 많았다. 가구소득은 개인의 경제적 배경을 측정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편리한 변수이지만, 측정의 타당성(설문 상 자산소득이 포함되는지 모호함 등)과 신뢰성(정확하게 월평균 가구 수입을 확인하며 사는 이가 별로 없음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가구소득 분석결과 만을 가지고 로스쿨 졸업 법률가와 사법연수원 졸업 법률가 간 경제적 배경이 차이가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려우며, 별도의 변수를 동원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를 함께 고찰해 볼 수 있다.

## (2)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개인의 가구소득보다 개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 등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 먼저 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전체 법률가 집단에서 대졸 이상의 비중이 50%에 가깝게 나타났다(아버지 59.2%, 어머니 40.4%).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의 비중도 상당하다(아버지 21.9%, 어머니 7.1%).<sup>35)</sup> 부모의 연령대를 추정하여 한국 전체인구대비 학력평균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수치는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sup>36)</sup> 일반적으로 말해 법률가들이 부모가 고학력인 집안에서 배출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법률가 집단 간 부모의 학력을 3개 하위집단(고졸 이하, 대졸, 석사졸 이상)으로 구분해서 보더라도, 아버지의 학력에서 로스쿨 집단과 연수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chi^2 = 2.53$ ,  $df = 2$ ,  $p = 0.28$ ). 다만 고등학교 졸업 시점에서의 어머니의 학력에서 로스쿨 집단(52%)이 연수원 집단(42.8%)에 비해 대졸 이상인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에 근사하는 정도였다( $\chi^2 = 5.72$ ,  $df = 2$ ,  $p = 0.057$ ).

35) 미국의 AJD 결과도 부모의 학력과 관련해 우리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응답 법률가의 부모 중 절반 이상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며, 대학원 이상의 비중은 25%에 달하였다. AJD II, *supra* note 20, p.20.

36) 조사대상 세 집단의 평균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부모의 연령대는 55세부터 64세 사이로 추정된다. OECD가 보고한 2012년 기준 한국의 교육지표에 따르면 동 연령대에서 중졸 이하는 52%, 고졸은 34%, 전문대졸은 2%, 대졸 이상은 11%로 나타났다.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4: OECD Indicators*, <http://www.oecd.org/edu/Education-at-a-Glance-2014.pdf>, p.44

<표 8> 응답자 고등학교 졸업 시 부모의 학력

	아버지					어머니				
	로스쿨	40기-43기	34기-43기	33기 이전	전체	로스쿨	40기-43기	34기-43기	33기 이전	전체
초졸 이하	2%	7.1%	10.2%	18.4%	8.2%	4.6%	7.7%	15.0%	36.0%	13.4%
중졸	3%	4.4%	6.6%	14.9%	6.3%	7.6%	12.1%	12.3%	13.7%	11.1%
고졸	24%	23.1%	25.2%	22.4%	23.8%	32.8%	34.3%	31.3%	29.7%	32.4%
전문대졸	3.6%	2.4%	1.3%	2.3%	2.5%	3%	3%	2.6%	2.3%	2.8%
대졸	39.8%	39.1%	36.7%	31.6%	37.5%	41.1%	35.4%	33.0%	16.6%	33.3%
석사졸업	15.5%	14.6%	12.4%	6.3%	12.9%	8.9%	5.4%	4.4%	1.7%	5.6%
박사졸업	12.2%	9.2%	7.5%	4.0%	8.8%	2%	2%	1.3%	0.0%	1.5%
응답자 (무응답제외)	304	294	520	174	998	302	297	523	175	1001

고등학교 졸업 시점을 기준으로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일부 항목에서만 표적 집단과 비교집단 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로스쿨 집단의 부모가 연수원 집단의 부모에 비해 10명 이상의 부하직원을 가지는 직업(45.8%)과( $\chi^2 = 4.11$ ,  $df = 1$ ,  $p < 0.05$ ) 경영진 또는 임원이었던 비중(24.7%)이 유의하게 높았다( $\chi^2 = 9.61$ ,  $df = 1$ ,  $p < 0.01$ ). 그렇지만 부모가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의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자영업,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반면 경력법률가 집단의 경우 사법연수원 34기 이후와 33기 이전 법률가들의 부모의 직업은 많은 차이를 보였다. 34기 이후 법률가의 부모들의 직업비중은 50인 이상의 기업 근무, 경영진 혹은 임원, 전문직 등 모든 항목에 있어 33기 이전 법률가의 경우보다 높았다. 요컨대 젊은 법률가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경력 법률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법률가 집단의 부모는 대체로 고학력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며, 이 점에 있어 특히 로스쿨과 연수원 두 집단 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젊은 법률가 집단과 경력법률가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자의 부모가 더 고학력이고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사회가 최근 50년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 개개인의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이 급격히 신장해 왔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변화는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법률가 집단의 부모는 특히 이런 사회경제적 배경의 성장 변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들의 경우 연수원 기수 34기를 기점으로 차이가 확연히 나타났다. 즉 부모직업, 가족 중 법률가 여부에 관해서는 연수원 33기 이

&lt;표 9&gt; 부모의 직업

	로스쿨	40기-43기	34기-43기	33기 이전	전체	
					%	n
50인 이상의 기업에서 근무	39.6%	40.0%	37.0%	26.9%	36.9%	376
10명 이상 부하직원	45.8%	37.7%	33.5%	27.5%	37.4%	381
자영업운영	39.0%	33.0%	34.8%	29.7%	34.5%	353
경영진 또는 임원	24.7%	14.7%	14.8%	9.9%	16.9%	172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18.5%	16.7%	13.5%	7.7%	14.9%	152

표주) 고등학교 졸업 시점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명의 직업이 해당 항목과 일치하는 응답자의 비율로, 열의 방향으로 중복이 가능하다.

전, 34기 이후(34기-43기), 40기 이후(40기-43기) 순으로 로스쿨과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 34기 이후의 시점부터는 합격자의 부모의 사회적 배경이 최근 로스쿨 졸업자나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3) 가족 중 법률가 여부

법률가 전체를 놓고 볼 때 부모 중 법률가가 있는 경우는 3.4%,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중 법률가가 있는 비중은 8.9%였다. 또한 가족 및 친척 중 법률전문가가 있다는 비중은 30.3%에 달했다.<sup>37)</sup> 그러나 집단별로 법률가가 부모( $\chi^2 = 2.65$ ,  $df = 2$ ,  $p = 0.26$ ), 가족( $\chi^2 = 1.63$ ,  $df = 2$ ,  $p = 0.44$ ), 가족 및 친척( $\chi^2 = 4.70$ ,  $df = 2$ ,  $p = 0.10$ ) 중 법률가가 있는지 여부를 보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34기를 기준으로 경력법률가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보아도, 로스쿨 출신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족 중 법률 전문가가 많다고는 할 수 없다. 부모 중 법률 전문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사법연수원 34기 이후에 그 이전 세대에 비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chi^2 = 4.11$ ,  $df = 2$ ,  $p = 0.13$ ).

37) 부모, 가족, 친척 중 법률가 비중을 비법률가 집단과 비교해 어떤 수준에 있는 것인지는 비교자료의 미비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lt;표 10&gt; 부모, 가족, 친척 중 법률가가 있는지 여부

	로스쿨	40기-43기	34기-43기	33기이전	전체	
					%	n
부모 중 법률 전문가 있다	3.6%	4.7%	3.0%	1.6%	3.4%	35
가족 중 법률 전문가 있다	8.4%	10.7%	8.7%	7.1%	8.9%	91
가족 및 친척 중 법률 전문가 있다	26.3%	29.7%	33.0%	34.6%	30.3%	309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유복한 가정환경 출신, 혹은 법률가 집안 출신이 로스쿨에 입학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로스쿨 출신 법률가와 동시대에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로스쿨이든 사법연수원이든 최근 세대 법률가들은 이전 세대의 경력법률가 집단과 비교할 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사법연수원 합격자생수가 1,000명으로 증가한 사법연수원 33기를 전후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는 추세를 보였다. 결국 법률가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모의 고소득화와 고학력화 현상은 지난 50년간 꾸준히 진행되어 온 인구의 고학력화 현상과 관련된 것이며, 특히 로스쿨 출신이든 사법연수원 출신이든 관계없이 젊은 법률가 집단의 부모에게 강조되어 나타난 현상이지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4) 학자금 조달

로스쿨의 등록금이 과하다는 비판은 ‘돈스쿨’ 논쟁의 핵심이다. ‘돈스쿨’의 부정적 폐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로스쿨의 학비가 비싸서 가난하고 능력 있는 법률가 지망생들의 진입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비싼 학비부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하게 되고, 또한 대출금 상환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공적 부문 등 애초에 본인이 희망하는 직역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느냐는 것이다.

로스쿨 집단의 학자금 조달 경로를 살펴보면, 각 해당 경로를 경험한 응답자의 수는 로스쿨 수여 장학금이라는 응답이 79.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가족/친척 지원이 74.4%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본인예금, 정부대출, 금융권 대출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로스쿨 장학금을 수여받은

바 있고, 또한 가족과 친족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조달 경로별로 전체 학자금에서 평균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비중이 가장 높은 경로는 가족/친족 지원으로 38.07%를 차지했고, 이어서 로스쿨 수여 장학금이 33.79%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본인예금(9.15%), 정부대출(9.38%)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11> 학자금 조달경로 및 조달 비중

	해당	평균비중
학기 중 인턴 또는 취업(유급 인턴십 포함)	9.42%	1.38%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대출	3.25%	0.27%
법학전문대학원 수여 장학금	79.55%	33.79%
정부대출	26.30%	9.38%
정부 수여 장학금	2.27%	0.37%
금융권 대출	19.48%	3.10%
민간 수여 장학금	8.77%	2.15%
가족(배우자 제외)이나 친족으로부터 지원	74.35%	38.07%
배우자 지원	8.77%	1.71%
본인의 예금	42.21%	9.15%
기타	1.95%	0.63%

표주) 복수응답 가능

평균비중은 전체 학자금을 100%로 했을 때, 해당 경로가 차지하는 비중임

학자금 대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출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36.4%로 나타났으며, 대출액 규모는 평균 2,957만원으로 조사되었다.<sup>38)</sup> 부모의 학력이 낮을 수록 학자금 대출경험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1천~3천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3천만원~5천만원 미만(28.6%)이었으며, 5천만원 이상 고액 대출자는 15.2%, 1천만원 미만 소액 대출자는 14.3%로 조사되었다. 미상환 대출금은 평균 1,661만원으로 조사되었고, 평균 상환기간은 4.14년으로 나타났다.

38) 반면 미국의 AJD 조사에 의하면 85% 정도가 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대출금 규모는 \$70,000에 달하였다. 또한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는 13%에 (아시아계는 22%로 가장 높은 수준) 불과하였다. AJD I, *supra* note 20, pp.71-73.

&lt;표 12&gt; 부모 학력 별 학자금 대출 경험

	전체	부 고졸 이하	부 전문대 ~ 대졸	부 대학원 이상
대출 경험 여부	36.4%	45.5%	37.1%	23.8%
	전체	모 고졸 이하	모 전문대 ~ 대졸	모 대학원 이상
대출 경험 여부	36.4%	46.3%	29.3%	24.2%

위의 결과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비부담이 높아져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학자금 대출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 점은 미국의 로스쿨과 비교해 봐도 사정이 비슷하다. 그러나 학자금 조달 경로와 비중에서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미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sup>39)</sup> 따라서 로스쿨의 학비가 과거 법과대학보다 증가하여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장학금 혜택이 있어 재정적 형편이 어려운 법률가 지망생들에게 커다란 진입장벽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에도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 및 장학금 수여를 실시하고 있고,<sup>40)</sup> 앞으로 개개 로스쿨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다면 오히려 법률가의 문호를 과거 보다 다양하게 넓히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로스쿨 교육을 위한 대출을 하였지만 평균액수나 상환 소요기간을 볼 때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출 상환금 부담이 법률가의 직역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로스쿨 출신 집단 법률가들이 현 직장 선택시 고려한 사항을 보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한 충분한 연봉’, ‘학자금 대출상환 지원 또는 학자금 대출 변제 프로그램 제공 여부’에 대한 항목은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적부문에 취직한 응답자와 공적부문에 취직한 응답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직업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을 물어본 결과 양자 간의 응답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중장기적 소득에 대한 기대’(t = -2.64, df = 37.42, p < 0.05), ‘특정 법률분야에 대한 관심’(t = 2.32, df = 40.46, p < 0.05),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t = 2.03, df = 38.44, p < 0.05), ‘사회적 공헌’(t = 2.73, df = 37.70, p < 0.01), ‘해당 분야에 대한 명성’(t =

39) AJD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로스쿨의 장학금 수혜비중은 7%에 지나지 않았다. AJD I, *supra* note 20, p.73.

40) 국내 로스쿨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은 43.5%이고, 특별전형 입학자의 93.5%가 장학금을 수혜했으며, 86.5%는 전액장학금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록, *supra* note 6, 201쪽.

2.70,  $df = 40.88$ ,  $p < 0.01$ ), ‘향후 경력이동 기회’( $t = 3.09$ ,  $df = 46.18$ ,  $p < 0.01$ )였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공적부문을 기피하는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3> 현 분야 선택 시 고려한 항목

	로스쿨 전체	사적 부문 (n = 276)	공적 부문 (n = 32)
중장기적 소득에 대한 기대	4.52	<b>4.60</b>	3.81
특정 법률 분야에 대한 관심	4.67	4.60	<b>5.25</b>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한 충분한 연봉	2.83	2.88	2.41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또는 학자금 대출 변제 프로그램 제공 여부	1.63	1.59	1.94
전문지식 개발을 위한 기회	5.02	4.97	5.38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에 대한 기대	4.60	4.53	<b>5.19</b>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	3.91	3.82	<b>4.69</b>
해당 분야에 대한 명성	4.46	4.38	<b>5.13</b>
향후 경력 이동에 대한 기회	4.85	4.78	<b>5.47</b>
기타	3.68	3.68	3.69

### 3. 법학 교육 및 법률가 양성제도에 대한 평가

#### (1) 로스쿨 교육에 대한 만족도

법학교육의 수요자인 로스쿨 및 연수원 졸업자들에게 그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경험과 평가를 물어서 로스쿨 교육의 성과를 검토할 수 있다. 로스쿨 법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기준으로 볼 때, 로스쿨 체제 출범 후 지난 6년 동안 교육과정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로스쿨 출신 법률가들의 로스쿨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5점 척도에 3.67). 교육에 대해 만족했다는 응답이 67.2%에 달했고(대체로 만족 55.5%, 매우 만족 11.7%),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7%에 불과했다. 만약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을 다시 시작한다고 가정할 경우, 출신 로스쿨로 재입학할 것이라는 응답도 높은 편(67.5%)이어서 출신학교별 편차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sup>41)</sup>



&lt;표 14&gt; 법학전문대학원 만족도

	개체수	비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6	1.9%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24	7.8%
보통이다	71	23.1%
대체로 만족한다	171	55.5%
매우 만족한다	36	11.7%
Total	308	100%
		<b>평균 만족도</b>
법학전문대학원 평균		3.67

## (2) 교육과정 중 활동경험

교육과정 중의 과외활동 경험을 보면 로스쿨 교육이 사법연수원 교육보다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가로서의 교육과정 중 활동경험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lt;표 15&gt; 과외 활동 경험

구분	활동경험 있음	
	로스쿨집단 308명 (변호사시험 1~3차)	연수원집단 300명 (사법연수원 40~43기)
논문공모 응시	16.9%	1.0%
자치회 활동(학생회)	29.2%	18.0%
시민단체	9.1%	5.3%
동문회	30.2%	82.3%
공익 법률기관, 인권보호 단체 등	19.8%	18.7%
학회활동		61.3%
법학학술지 로리뷰	29.9%	
모의재판	69.8%	
무료법률 상담	33.8%	
정당	1.3%	
기타	5.2%	5.7%

41) 최근 미국에서도 로스쿨 교육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지만, 실제로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LSSSE, *supra* note 21.

로스쿨 집단이 연수원 집단에 비해 각 항목별 활동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집단의 경우 모의재판, 법률상담, 법학학술지(로리뷰) 등 실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률관련 활동에 경험빈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연수원 집단의 경우 네트워크에 용이한 동문회나 학회활동에 경험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교우관계

로스쿨 집단과 연수원 집단의 교육과정 동안 동료/선후배 등 교우관계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7점 척도에서 로스쿨 집단의 평가가 전체 평균 4.87점, 연수원 집단은 4.50점으로 대체로 교우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항목별로는 로스쿨 집단의 경우, ‘구직활동에 도움이 된다’, ‘불평등도 존재한다’라는 진술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협력적이다’, ‘경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진술에는 상대적으로 동의의 정도가 낮았다. 연수원 집단의 경우, ‘평등한 편이다’, ‘불평등도 존재한다’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높은 동의의 정도를 보인 반면, ‘향후 나의 경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쟁적인 측면도 존재한다’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동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를 통해 추론해 보면 로스쿨 집단의 교육환경이 다소 경쟁적이고 교우관계에서 불평등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응답자들의 “평등”에 관한 의미가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인지 아니면 출신학부별 그룹화 등이 이루어져 상대적 위화감을

<표 16> 법학전문대학원 및 사법연수원의 교우관계

	로스쿨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에서의 교우관계는 협력적이다	4.68	5.31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에서 친구 및 선후배 간에는 경쟁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5.39	5.42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에서 교우관계는 평등한 편이다	4.81	5.23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에서 친구 및 선후배 간에는 불평등도 존재한다*	3.69	3.32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에서의 교우관계는 나의 개인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5.24	5.43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에서의 교우관계는 나의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었다	4.06	4.19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에서의 교우관계는 향후 나의 경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5.18	5.18

\* 표시를 한 항목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의미를 가진다.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심층면접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될 필요가 있다.

(4)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로스쿨 집단과 연수원 집단이 각각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의 교육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양 집단 공히 높게 평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양쪽 모두 법률가로서 경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학수학기간이 짧다는 항간의 인식과는 달리 실제 로스쿨 집단 법률가들은 수학기간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반면 ‘실무교육과 실습기회’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이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교육과정 전반적 평가

교육요소별 도움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 매우 동의한다 7)			
로스쿨 집단 (n = 308)	7점 척도 평균( 점)	연수원집단 (n = 300)	7점 척도 평균( 점)
법학전문대학원은 내가 법률가로서의 경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했다	4.95	사법연수원은 내가 법률가로서의 경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했다	5.39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론 중점의 교육을 제공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3.04	사법연수원은 판사 양성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여, 변호사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3.54
변호사 시험과목은 실제 업무와 연관성이 높다	4.64	사법연수원은 검사 양성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여, 변호사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3.41
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더 많은 실무 교육, 실습을 받고 싶었다*	4.35	나는 사법연수원에서 더 많은 변호사 실무 교육, 실습을 받고 싶었다*	4.64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 수학기간은 부족하다*	2.97	2년의 사법연수원의 수학기간은 부족하다*	2.34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및 강사는 충분한 학문적 지도와 조언을 제공했다	4.69	사법연수원의 교수 및 강사는 충분한 학문적 지도와 조언을 제공했다	5.32

\* 표시를 한 항목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의미를 가짐.

(5) 교육 분야별 만족도

교육 분야별 교육 만족도에 있어서도 로스쿨 집단의 평가는 연수원 집단의 사법 평가와 비교해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교육과정이 법률가로 경력을 준비하는 전문지식을 쌓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전문지식 유형별로 평가한 결과, 전체 전문지식 항목의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로스쿨 집단이 7점 만점 평균 기준 4.23점, 연수원 집단은 전체 평균 3.77점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항목별로는 로스쿨 집단의 경우, 민사법, 형사법, 상사법, 계약법/물권법/채권법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환경법, 국제법, 조세법, 국제거래법에 대한 교육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연수원집단의 경우, 민사법, 형사법, 계약법/물권법/채권법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국제법, 국제거래법, 환경법에 대한 교육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를 놓고 볼 때 로스쿨 집단과 연수원 집단 공히 기본법 중심의 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응답자들이 교육

<표 18> 법 분야별 전문지식 교육 만족도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1 - 매우 중요했다 7	7점 평균(점)	
	로스쿨집단 (n = 308)	연수원집단 (n = 300)
전문지식 교육 만족도(항목평균)	4.23	3.77
공법, 헌법	4.77	3.21
민사법	5.64	6.06
형사법	5.37	5.86
상사법	5.31	4.23
계약법, 물권법, 채권법	5.57	5.49
국제법	3.23	2.88
국제거래법	3.31	2.84
노동법	3.83	3.06
조세법	3.29	2.98
경제법	3.73	3.13
환경법	3.07	2.73
지적재산권법	3.60	3.01
가족법	4.28	3.58
법조윤리	4.22	4.26

분야별 만족도를 실제 업무와 얼마나 연관이 되는가로 이해하고 답했을 수 있다.<sup>42)</sup> 둘째, 로스쿨 도입의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내에서 특성화 교육의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6) 직무역량 신장과 관련한 만족도

법학전문대학원 및 사법연수원의 교육과정이 법률가의 직무적 역량을 키우는 데 충분한 교육을 제공했는지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 연수원집단이 7점 만점에 평균 4.63점, 로스쿨 집단은 평균 4.25점으로 두 집단 모두 중간 이상의 대체로 긍정적인 만족도를 보이는 가운데, 연수원 집단의 평가 점수가 높게 나왔다.

항목별로는 로스쿨 집단의 경우, 판례 등 기타법률 지식, 법률적 분석/추론 능력, 문제해결 능력 역량에 대한 교육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협상력, 국제적 역량을 키울 기회, 계약 관련 업무에 대한 친숙도 교육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19> 직무역량 신장을 위한 항목별 교육 만족도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 - 매우 만족한다 7	7점 평균 (점)	
	로스쿨집단 (n = 308)	연수원집단 (n = 300)
직무역량 교육 만족도 (항목평균)	4.25	4.63
판례 기타 법률 지식	5.21	5.69
법률적 분석, 추론 능력	5.04	5.50
문제 해결 능력	5.00	5.43
법적인 글쓰기 능력	4.94	5.58
변론 능력	3.84	4.46
계약 관련 업무에 대한 친숙도	3.66	3.77
협상력	3.30	3.28
직업윤리관 및 윤리적 판단력	4.23	4.45
팀워크 역량, 협동심	4.11	4.45
국제적 역량을 키울 기회	3.43	3.14
예절	3.99	5.17

42) 실제 설문문항은 “귀하가 법률가로서 경력을 준비함에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의 교육은 다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평가해 주십시오”이었다.

연수원집단의 경우에도 판례 등 기타법률지식, 법률적 분석/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교육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법적인 글쓰기 능력에 대한 교육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조사된 반면,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적 역량을 키울 기회, 협상력, 계약업무에 대한 친숙도에 대한 교육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전반적으로 두 집단이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7) 교육요소별 만족도

법학전문대학원 및 사법연수원의 교육과정이 법률가로서 경력을 준비하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교육요소별로 평가한 결과, 항목평균을 기준으로 교육과정 전반을 평가했다. 다만 평가항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양 집단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항목별로는 로스쿨집단의 경우, 수업커리큘럼, 법률적 글쓰기에 대한 교육, 법학전문대학원만의 특별 강좌에 대한 도움정도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리걸 클리닉, 해외 연수 기회 제공, 공익활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도움정도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원집단의 경우, 형사재판 실무, 검찰실무 수습, 법원실무 수습, 검찰실무에

<표 20> 교육요소별 도움정도

교육요소별 도움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 매우 도움이 되었다 7)			
로스쿨 집단 (n = 308)	7점 척도 평균 (점)	연수원집단 (n = 300)	7점 척도 평균 (점)
수업 커리큘럼	5.06	원내교육 중 민사, 형사재판실무	5.60
리걸클리닉 (legal clinic)	3.76	원내교육 중 검찰실무	5.20
귀하의 법학전문대학원만의 특별 강좌	4.56	원내교육 중 민사, 형사변호사실무	4.95
학기 중 취업 기회 제공	3.69	명사 특강	3.61
해외 연수 기회 제공	2.72	세법, 중국법 등 특별법 전공과목들	3.95
학기 중 인턴십	3.92	법원실무 수습	5.21
법률적 글쓰기에 대한 교육	4.54	검찰실무 수습	5.72
개인 생활 지도 및 심리 상담	3.66	변호사실무 수습	4.77
기타	3.67	전문기관 연수	4.20
공익활동 (pro bono 활동 포함)	2.96	사회봉사 활동	4.06
법조윤리에 대한 교육	3.71	법조윤리에 대한 교육	3.70

대한 도움정도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법조윤리에 대한 교육, 명사 특강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 (8) 취업 시 영향

응답자들이 현 직장에 취업시 무엇이 중요하게 영향을 끼쳤느냐를 살펴보면 로스쿨 교육내적 요소와 외적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직장 채용합격 시 작용요인의 항목별 고려정도(중요도)를 자기 평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타 개인 능력과 졸업대학이라는 응답이 각각 4.34점, 4.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졸업 로스쿨 명성 순위(4.04점), 로스쿨 및 연수원 성적(4.01점), 이전 직장 경력(3.66점), 이전 근무경험 유무(3.58점), 성별(3.26점), 학연(2.70점), 인맥(2.60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연수원 집단에서는 연수원 성적, 출신학부의 명성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응답한 의견이 많았던 반면, 로스쿨 집단에서는 개인적 능력, 출신학부의 명성, 모의재판/논문 발표경험, 이전직장 경력과 이전근무경험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21> 취업 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요소

	전체	로스쿨	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성적	4.01	3.82	4.39
모의재판 참여 활동 및 논문 발표 실적	2.08	2.58	1.88
졸업한 대학교(학부)의 명성, 순위	4.33	4.61	4.42
현재 직장에서의 이전 근무 경험 유무	3.58	3.92	3.08
이전 직장 경력	3.66	4.05	3.08
고객(의뢰인) 유치능력	2.44	2.61	2.10
교수 추천	1.97	2.50	1.78
개인적 인맥(가족, 친구, 동료)	2.60	2.81	2.35
학연(대학, 고등학교 등)	2.70	2.86	2.55
석사 이상의 학위	2.17	2.91	1.73
성별	3.26	3.54	3.45
외모	3.04	3.40	3.21
기타 개인 능력	4.34	4.76	4.25
졸업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성 및 순위	4.04	4.04	NA

#### 4. 경력법률가의 로스쿨 출신 및 연수원 출신 법률가에 대한 평가

로스쿨 출신 법률가와 사법연수원 졸업 법률가에 대해 경력법률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력 법률가 집단에게 두 집단에 대한 능력, 자질, 인성 등을 물어 보았다. 이러한 비교 평가는 어느 한 집단이 능력이나 자질, 인성 면에서 우월하다든지 보고자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어느 한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평가하고자 한 것도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동료 법률가의 평가와 더불어 직접 수요자인 의뢰인의 평가를 얻어서 종합해야 타당할 것이다. 또한 향후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법학교육제도가 일원화되면 이러한 두 집단 간의 비교는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로스쿨 교육을 통해 배출한 법률가에 대한 평가를 사법연수원 졸업 법률가에 대한 평가와 비교해서 검토하는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표방하는 ‘새로운 법률가’적 자질이 얼마나 실제에서 구현되고 평가받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데 있다.

평가항목은 각 집단 법률가들에 대한 전반적 평가, 법률가로서의 직무역량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인성에 대한 평가의 세 분야였다. 또한 평가자의 대상에 대한 친숙도를 통제하기 위해 직장 안에서 함께 일을 해본 법률가에 대한 평가와 직장 밖에서 경험한 법률가에 대한 평가를 병행했다.

##### (1) 전반적 평가

경력법률가 집단의 전반적 평가를 보면, 직장 내에서 경험한 법률가들에 대한 평가가 직장 외에서 경험한 법률가들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와 직장 외를 막론하고 연수원 집단이 로스쿨 집단보다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항목별로 보면 ‘회의, 재판 등 약속준수’는 로스쿨 집단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나머지 항목들에서는 연수원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같은 직장 내에서 평가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해 본 바에 따르면 40세 미만 경력법률가 집단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연수원 집단을 유의하게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40세 이상 경력법률가 집단에서 로스쿨 집단과 연수원 집단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2개, 즉 ‘회의, 재판 등 약속준수’에서는 로스쿨 집단이 우수했지만( $t=3.46$ ,  $df=299.34$ ,  $p<0.001$ ), ‘업무를 제시간에 끝냄’에서는 연수원 집단 우수하였고( $t=-4.24$ ,  $df=274.97$ ,  $p<0.001$ ), 나머지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파트너급 이상의 경륜을 갖춘 법률가가 같은



직장 내의 로스쿨 및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에 대해 내린 전반적 평가는 실제적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22> 법률가 평가: 평가집단 (n=412) / 단위: 7점 평균(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 매우 동의함 7	전체	직장 내 법률가		직장 외 법률가	
		로스쿨집단 (로스쿨출신 변호사시험 1~3차 합격)	연수원집단 (사법연수원 40~43기 수료)	로스쿨집단 (로스쿨출신 변호사시험 1~3차 합격)	연수원집단 (사법연수원 40~43기 수료)
전반적 평가(항목평균)	4.47	4.65	4.99	3.58	4.67
회의, 재판 등 약속 시간을 잘 지킨다	4.79	5.19	5.13	3.99	4.84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한다	4.44	4.63	5.01	3.37	4.74
타인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다	4.51	4.87	4.96	3.57	4.63
타인의 비판을 잘 수용한다	4.34	4.61	4.77	3.52	4.44
업무를 제시간에 끝낸다	4.21	3.99	4.97	3.21	4.66
팀워크에 협동적이다	4.41	4.50	4.93	3.67	4.53
열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4.53	4.66	5.01	3.75	4.70
예절을 잘 지킨다	4.55	4.71	5.17	3.55	4.78

<표 23> 법률가 평가: 평가집단 (n=412) / 단위: 7점 평균(점) - 40세 이상/이하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 매우 동의함 7	전체	평가40세미만 (N = 194)				평가40세이상 (N = 218)			
		직장내		직장외		직장내		직장외	
		로스쿨	연수원	로스쿨	연수원	로스쿨	연수원	로스쿨	연수원
전반적 평가(항목평균)	4.47	4.22	4.92	3.31	4.81	5.11	5.07	3.90	4.50
회의, 재판 등 약속 시간을 잘 지킨다	4.79	4.70	5.01	3.80	4.94	<u>5.72</u>	5.27	4.21	4.72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한다	4.44	4.24	4.88	3.11	4.87	5.06	5.14	3.68	4.58
타인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다	4.51	4.43	4.84	3.26	4.76	5.34	5.10	3.95	4.49
타인의 비판을 잘 수용한다	4.34	4.21	4.72	3.26	4.58	5.05	4.82	3.84	4.26
업무를 제시간에 끝낸다	4.21	3.62	4.92	3.07	4.88	4.39	<u>5.03</u>	3.39	4.39
팀워크에 협동적이다	4.41	4.08	4.91	3.39	4.67	4.96	4.96	4.00	4.37
열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4.53	4.29	4.92	3.52	4.77	5.05	5.11	4.03	4.62
예절을 잘 지킨다	4.55	4.14	5.18	3.09	4.97	5.31	5.17	4.11	4.56

〈표 24〉 법률가 직무역량 평가: 평가집단 (n = 412) / 단위: 7점 평균(점)

구분 매우 부족함 1 - 매우 뛰어함 7	전체	직장 내 법률가		직장 외 법률가	
		로스쿨집단 (로스쿨출신 변호사시험 1~3차 합격)	연수원집단 (사법연수원 40~43기 수료)	로스쿨집단 (로스쿨출신 변호사시험 1~3차 합격)	연수원집단 (사법연수원 40~43기 수료)
역량 평가 (항목평균)	3.95	3.64	4.80	2.84	4.52
판례 기타 법률 지식	4.00	3.42	5.20	2.55	4.84
법률적 분석/추론 능력	3.95	3.44	5.09	2.49	4.77
문제 해결 및 대안 제시 능력	3.87	3.46	4.86	2.56	4.61
의사소통 능력: 법문서 작성	3.93	3.41	5.13	2.43	4.76
의사소통 능력: 말하기	4.08	3.92	4.84	2.99	4.56
변론능력	3.85	3.46	4.77	2.65	4.52
협상력	3.76	3.55	4.42	2.83	4.23
재판준비(진행)/ 수사능력	3.87	3.39	4.95	2.60	4.54
윤리적 판단력	4.21	4.05	4.85	3.40	4.52
팀워크 역량/ 협동심	4.28	4.26	4.90	3.54	4.43
의뢰인 섭외 능력	3.53	3.30	4.00	2.82	4.00
정보 수집 능력	4.10	4.05	4.64	3.26	4.44
국제적 업무 수행 능력	3.80	4.13	3.95	3.20	3.91

## (2) 직무역량 평가

직무역량 평가에 있어서 연수원 출신 법률가가 로스쿨 출신 법률가에 비해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표 24〉 참조). 로스쿨 집단이 연수원 집단보다 긍정적 평가를 받은 항목은 ‘국제적 업무 수행능력’이었다. 평가항목별로 두 집단의 평가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판례 기타 법률지식, 법률적 분석/추론 능력, 법문서 작성 능력이었다. 반면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항목은 정보수집 능력, 팀워크 역량/협동심, 의뢰인 섭외 능력, 윤리적 판단력이었다.

이를 같은 직장 내에서 평가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해 본 바에 따르면 40세 미만 경력법률가 집단에서는 ‘국제적 업무 수행 능력’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연수원 집단을 유의하게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40세 이상 경력법률가 집단에서 로스쿨 집단과 연수원 집단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팀워크 역량과 협동심’, ‘국제적 업무 수행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연수원 집단을 유의하게 높게 평가했다.<sup>43)</sup> 대체적으로 경력법률가들이 실무적 역량평가에서 연수원 집단을 높게 평가한 것을

<표 25> 법률가 역량 평가: 평가집단 (n=412)/

단위: 7점 평균(점) - 40세 이상/이하

구분  매우 부족함 1 - 매우 뛰어함 7	전체	평가40세 미만 (N = 194)				평가40세 이상 (N = 218)			
		직장내		직장외		직장내		직장외	
		로스쿨	연수원	로스쿨	연수원	로스쿨	연수원	로스쿨	연수원
역량 평가 (항목평균)	3.95	3.40	4.78	2.59	4.61	3.98	4.69	3.21	4.31
판례 기타 법률 지식	4.00	2.99	5.29	2.13	4.99	3.88	<b>5.11</b>	3.05	4.66
법률적 분석/추론 능력	3.95	3.02	5.16	2.00	4.92	3.89	<b>5.02</b>	3.08	4.58
문제 해결 및 대안 제시 능력	3.87	3.07	4.97	2.15	4.81	3.88	<b>4.74</b>	3.05	4.37
의사소통 능력: 법문서 작성	3.93	2.99	5.25	1.98	4.95	3.85	<b>5.01</b>	2.97	4.52
의사소통 능력: 말하기	4.08	3.65	4.91	2.72	4.72	4.21	<b>4.76</b>	3.32	4.37
변론능력	3.85	3.16	4.81	2.33	4.69	3.78	<b>4.74</b>	3.05	4.31
협상력	3.76	3.30	4.44	2.72	4.41	3.81	<b>4.39</b>	2.97	4.01
재판준비(진행)/ 수사능력	3.87	3.01	4.96	2.28	4.64	3.79	<b>4.93</b>	2.97	4.42
윤리적 판단력	4.21	3.70	4.91	3.13	4.57	4.43	<b>4.79</b>	3.74	4.46
팀워크 역량/ 협동심	4.28	3.89	4.91	3.30	4.48	4.66	4.89	3.82	4.36
의뢰인 섭외 능력	3.53	3.29	3.94	2.74	4.15	3.31	<b>4.07</b>	2.92	3.81
정보 수집 능력	4.10	3.97	4.68	3.11	4.55	4.15	<b>4.59</b>	3.45	4.30
국제적 업무 수행 능력	3.80	4.09	3.94	3.04	3.98	4.16	3.95	3.39	3.83

보면, 앞으로 로스쿨이 보다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법률 시장에서의 평가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 인성 평가

인성 평가에 있어서도 연수원 집단이 로스쿨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

43) 각 항목의 통계치 1) 판례 법률지식( $t=8.71, df=282.16, p<0.001$ ), 2) 법률적 분석/추론 능력( $t=-7.92, df=284.17, p<0.001$ ), 3) 문제해결 및 대안 제시 능력( $t=-6.01, df=292.53, p<0.001$ ), 4) 의사소통 능력: 법문서작성( $t=-8.02, df=285.65, p<0.001$ ), 5) 의사소통 능력: 말하기( $t=-4.01, df=286.79, p<0.001$ ), 6) 변론능력( $t=-7.11, df=291.40, p<0.001$ ), 7) 협상력( $t=-4.44, df=297.95, p<0.001$ ), 8) 재판준비(진행), 수사능력( $t=-8.27, df=292.74, p<0.001$ ), 9) 윤리적 판단력( $t=-2.79, df=298.91, p<0.01$ ), 10) 팀워크 역량/협동심 ( $t=-1.64, df=299.92, p=0.10$ ), 11) 의뢰인 섭외능력( $t=-5.11, df=299.96, p<0.001$ ), 12) 정보수집 능력( $t=-2.90, df=294.84, p<0.01$ ), 13) 국제적 업무 수행 능력( $t=1.23, df=292.94, p=0.22$ ).

가를 받았다. 평가항목별로 두 집단의 평가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자긍심/공익에 대한 고려, 동료에 대한 희생정신, 공정성 및 객관성 등이었다. 반면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항목은 직무에 대한 열정, 성실한 태도, 협동심 등이었다.

이를 같은 직장 내에서 평가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해 본 바에 따르면 40세 미만 경력법률가 집단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연수원 집단을 유의하게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40세 이상 경력법률가 집단에서 로스쿨 집단과 연수원 집단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4개(‘공정성 및 객관성’(t = -2.07, df = 299.81, p < 0.05), ‘책임감’(t = -3.49, df = 295.41, p < 0.001), ‘의뢰인에 대한 이해심’(t = -2.38, df = 299.86, p < 0.05), ‘법률가로서의 자긍심 및 공익에 대한 고려’(t = -4.90, df = 299.41, p < 0.001))였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인성 평가에 있어서는 직무능력 평가와 달리 전반적으로 로스쿨 집단과 연수원 집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26> 법률가 인성 평가: 평가집단 (n = 412) / 단위: 7점 평균(점)

구분 매우 부족함 1 - 매우 뛰어남 7	전체	직장 내 법률가		직장 외 법률가	
		로스쿨집단 (로스쿨출신 변호사시험 1~3차 합격)	연수원집단 (사법연수원 40~43기 수료)	로스쿨집단 (로스쿨출신 변호사시험 1~3차 합격)	연수원집단 (사법연수원 40~43기 수료)
인성평가 (항목평균)	4.30	4.28	4.87	3.46	4.59
공정성 및 객관성	4.34	4.22	5.20	3.37	4.57
책임감	4.39	4.23	5.11	3.43	4.79
직무에 대한 열정	4.37	4.47	4.75	3.55	4.72
의뢰인에 대한 이해심	4.20	4.15	4.89	3.23	4.52
긍정적 태도	4.49	4.48	5.20	3.68	4.60
성실한 태도	4.47	4.54	4.88	3.68	4.78
감정의 조절과 통제	4.31	4.27	4.93	3.49	4.53
협동심	4.28	4.37	4.72	3.52	4.50
동료에 대한 희생정신	4.11	3.94	4.93	3.23	4.32
법률가로서 자긍심 / 공익에 대한 고려	4.06	3.79	4.93	3.00	4.52
자기 계발 의지	4.28	4.65	4.00	3.86	4.59

<표 27> 법률가 인성 평가: 평가집단 (n=412) /

단위: 7점 평균(점) - 40세 이상/이하

구분  매우 부족함 1 - 매우 뛰어남 7	전체	평가40세 미만 (N = 194)				평가40세 이상 (N = 218)			
		직장내		직장외		직장내		직장외	
		로스쿨	연수원	로스쿨	연수원	로스쿨	연수원	로스쿨	연수원
인성평가(항목평균)	4.30	3.89	4.93	3.13	4.65	4.70	4.97	3.85	4.51
공정성 및 객관성	4.34	3.84	4.94	2.98	4.61	4.63	<b>4.91</b>	3.84	4.52
책임감	4.39	3.82	5.24	3.07	4.91	4.67	<b>5.15</b>	3.87	4.66
직무에 대한 열정	4.37	4.09	5.07	3.26	4.74	4.88	5.14	3.89	4.70
의뢰인에 대한 이해심	4.20	3.86	4.71	2.91	4.61	4.47	<b>4.80</b>	3.61	4.40
긍정적 태도	4.49	4.14	4.81	3.46	4.63	4.85	4.99	3.95	4.57
성실한 태도	4.47	4.11	5.20	3.33	4.87	5.00	5.20	4.11	4.68
감정의 조절과 통제	4.31	3.89	4.87	3.13	4.63	4.67	4.89	3.92	4.41
협동심	4.28	3.94	4.89	3.22	4.58	4.83	4.97	3.89	4.41
동료에 대한 희생정신	4.11	3.47	4.74	2.87	4.37	4.45	4.70	3.66	4.27
법률가로서 자긍심 / 공익에 대한 고려	4.06	3.38	4.93	2.52	4.59	4.23	<b>4.94</b>	3.58	4.43
자기 계발 의지	4.28	4.29	4.84	3.67	4.61	5.03	5.01	4.08	4.5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스쿨과 연수원 출신 법률가들에 대한 비교평가는 평가자가 어떤 배경과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평가자인 경력법률가의 직장 내에서 지위를 감안해서 평가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력법률가 집단 중 40세 미만은 실질적으로 피평가자 집단과 연령이나 법조경력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가자와 피평가자 집단이 잠재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40세 이상 집단은 대부분 파트너 변호사로 수하의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들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런 평가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젊은 법률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경력법률가의 연령을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40대를 전후해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법률가에 대한 ‘ 전반적 평가’, ‘ 직무역량평가’, ‘ 인성평가’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40세 이상의 경우 로스쿨 집단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혼재하지만, 40세 미만은 일관되게 로스쿨 법률가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런 평가의 차이는 높은 연령집단인 40세 이상 법률가들이 일반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리는 경향 때문이라기보다는 40세 미만 집단이 본인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로스쿨 집단에 대해 상대적으로 인색한 평가를 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 IV. 결론과 함의

이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특히 로스쿨 1기부터 3기 졸업 법률가를 표적집단으로 삼았으며, 동시대 사법연수원 졸업 법률가를 비교집단으로, 그리고 사법연수원 39기 이전 졸업생인 경력법률가를 평가집단으로 삼아 각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서 응답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설계했다. 이런 설계 덕분에 로스쿨 졸업 법률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인구사회적 배경, 법학 교육에 대한 평가, 직업적 평판 등을 동시대 사법연수원 졸업 법률가와 비교해서 알아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와 그 함의를 요약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스쿨 출신 법률가와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의 성과 연령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학부졸업 후 법률전문 교육을 받기까지의 시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로스쿨 도입으로 법학 수학 기간이 길어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러나 로스쿨 출신 법률가는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에 비해 출신학부, 학부전공, 경력 배경 등의 차원에서 모두 더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법률가 배경의 다양성을 진작할 것이라는 기대가 충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로스쿨 출신 법률가가 동시대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에 비해 부유한 집안 출신인지 확인해 보았다. 가구소득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은 차이가 없었으며, 고등학교 졸업 무렵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을 비교한 결과 약간의 차이(로스쿨 법률가의 어머니 학력이 높고, 아버지가 관리직인 비율이 높음)를 발견할 수 있었을 뿐, 유의하고 체계적인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차이는 세대 간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로스쿨과 40기 이후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39기 이전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에 비해 체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부모와 가족 중 법률 전문가가 있는지 여부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찾을 수 있었다.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의 가족 및 친지의 비율 역시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 간에 차이가 없었다. 법률가 가족 및 친지의 비율은 모든 비교 집단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국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집단이 법률전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증가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 우리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도 사회경제적 배경 수준이 높은 집단 출신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해서 법률직역에 진출했을 것이라고 본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법률가들은 이미 눈에 띄 정도로 많으며, 이 현상은 젊은 법률가 집단에서 강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추세는 로스쿨은 물론 사법연수원에서도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로스쿨의 도입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추세가 강화되는 현실을 감안해서, 로스쿨 입학정책에 배분적 정의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적극 선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셋째, 법학교육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보면 로스쿨 출신 법률가는 로스쿨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도 높고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나 부문별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것을 발견했다. 특히 로스쿨은 사법연수원에 비해 법학학술지, 논문공모, 자치회활동, 모의재판, 무료법률상담 등의 과외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또한 로스쿨 출신 법률가는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에 비해 실무중심의 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교육과 변호사 시험과목이 ‘실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만족도 역시 로스쿨 집단의 평가가 연수원 집단 평가보다 높았다. 특히 공법, 상사법, 계약법,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경제법, 환경법, 지적재산권법, 가족법 등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무역량과 관련한 교육에 있어서는 연수원 집단이 로스쿨 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구체적으로 판례, 법률 분석, 문제해결 능력, 글쓰기, 직업윤리, 예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로스쿨에서 법률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직무능력과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넷째, 동료평가의 차원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연수원 집단이 로스쿨 집단보다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결과는 경력법률가 집단이 직장 내에서 경험한 법률가들에 대해 직장 밖에서 경험한 법률가들보다 체계적으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 및 인성평가에 있어 평가자와 피평가자와의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내지는 친숙도에 따라 나타난 편차라고 볼 수도 있는 결과이다. 또한 평가자가 직접 직무 수행능력과 인성을 관찰할 수 있는 환경에 없었을 경우 대상 법률가에 대한 선입견의 작용을 배제할 수도 없다. 사법연수원 출신인 경력법률가가 같은 사법연수원 출신인 젊은 법률가를 집단을 친숙하게 보는 그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력법률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법률가들이 일관되게 로스쿨 출신 법률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젊은 경력법률가들은 로스쿨 출신 법률가를 잠재적 경쟁자로 보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따라서 로스쿨 출신 법률가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 결과를 놓고 일률적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향후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고 로스쿨 출신 법률가들이 주를 이루게 되는 법률시장 환경에서는 양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고 졸업생을 배출한지 4년이 되는 시점에서 로스쿨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부정적이라기보다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로스쿨이 제공하는 법학전문교육에 대한 졸업생 당사자의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점이 그러하며, 로스쿨 출신 법률가의 학부 및 전공의 다양성 덕분에 다양한 분야의 법률가 양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또한 로스쿨 제도로 도입으로 부유한 계층출신의 학생들이 법학전문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욱 높아진다는 우려는 실제적 증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경력법률가의 로스쿨 출신 법률가에 대한 평가가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에 대한 평가에 비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과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출신 법률가가 배출된 지 4년째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4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연수원 출신 법률가와 비교해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 여럿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법률가들이 배출되어 그동안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다양성 부족이 보완되고 있다는 발견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실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로스쿨 출신 법률가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로스쿨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꾸준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실무교육과 직무역량 교육과 관련해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도 로스쿨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와 제언을 제공함으로써 함께 법학전문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협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국내 최초의 법률가 직역조사로서 의의가 있지만,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특히 표집의 관점에서 보다 정교한 설계를 통해 응답률을 높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전문가 조사에 고질적이며 전형적인 문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사비용을 높여 재접촉과 면접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표본이 변호사 집단에 편향된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이런 점을 보완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향후 연구는 현 연구의 뒤를 잇는 추적조사의 형식으로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을 재접촉해서 응답을 얻는 패널조사(panel survey)가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역시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잘 알려져 있다. 법률가 직역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향후 5년 후 적절한 규모의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투고일 2015. 4. 26

심사완료일 2015. 5. 20

게재확정일 2015. 5. 29

## 참고문헌

- 강희원, “『법률가학』으로서의 법조윤리: 『법률가학』의 이론적 정초를 위하여”, **경희 법학**, 제48권 제2호(2013).
- 김도현, **한국의 소송과 법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 김두식, “법학전문대학원 3년의 시점에서 바라본 여성 법조인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젠더법학**, 제3권 제2호(2011).
- \_\_\_\_\_,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창비, 2009).
- 김두열, **경제성장과 사법정책: 법원정책, 형사정책, 법조인력정책의 실증분석**(해남, 2011).
- 김용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과 법조양성시스템 중간점검”, **저스티스**, 제120호(2010).
- 김제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의 진로와 제도개선 방안”, **연세 공공 거버넌스와 법**, 제3권(2012).
- 김창록, “한국 로스쿨의 의의와 과제: ‘로스쿨 시스템’을 로스쿨답게 만들어야”, **저스티스**, 제146-2호(2015).
- \_\_\_\_\_, **로스쿨을 주장하다**(유니스토리, 2013).
- 김호정,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사회진출 양상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결정”, **외법논집**, 제37권 제4호(2013).
- 박근용,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운영 현황: 학생선발의 다양성과 장학제도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제45호(2013).
- 송기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법과사회**, 제45호(2013).
- 신 평, “법조윤리, 어떻게 가르칠까?” **법학논총**, 제28집(2008).
- 이국윤, “한국 법조인양성제도의 역사 - 로스쿨 제도 이전”, **저스티스**, 제146-2호(2015).
- \_\_\_\_\_, **법률가의 탄생: 사법불신의 기원을 찾아서**(후마니타스, 2012).
- 이용규,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 **저스티스**, 제124호(2011).
- 이재협, “미국의 법학교육: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미국학**, 제31권 제2호(2008).
- 이종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의 실태와 과제”,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2권(2011).
- 이준석,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직업선택 변화와 그 원인: 판·검사 선호의 하락과

- 중대형로펌 선호 현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2호(2013).  
한상희, “법률서비스의 수급상황과 전망, 그것이 로스쿨에 미치는 영향”, **일감법학**, 제15권(2009).
- 한인섭, “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인가”,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박영사, 2000).  
홍성수, “로펌의 성장과 변호사윤리의 변화: 개인윤리에서 조직윤리로, 공익활동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법과사회**, 제41권(2011).
- Heinz, John and Laumann, *Chicago Lawyers: The Social Structure of the Bar* (revised ed.)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94).
- Heinz, John, Robert Nelson, Sandefur and Laumann, *Urban Lawyers: The New Social Structure of the Ba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 Law Schoo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Looking Ahead: Assessment in Legal Education, Annual Results 2014.
- Liu, Sida, “The Legal Profession as a Social Process: A Theory on Lawyers and Globalization”, *Law and Social Inquiry*, Vol. 38, No. 3 (2013).
- Miyazawa, Setsuo, Atsushi Bushimata, Keiichi Ageishi, Akira Jujimoto, Rikiya Kuboyama, and Kyoko Ishida, “Stratification or Diversification? –2011 Survey of Young Lawyers in Japan”, in Setsuo Miyazawa *et al.* (eds.), *East Asia’s Renewed Respect for the Rule of Law in the 21st Century: The Future of Legal and Judicial Landscapes in East Asia* (Brill/Nijhoff, 2015).
- The NALP Foundation for Law Career Research and Education and the American Bar Foundation, *After the JD: First Results of a National Study of Legal Careers*, 2004.
- The NALP Foundation for Law Career Research and Education and the American Bar Foundation, *After the JD II: First Results of a National Study of Legal Careers*, 2009.
- The NALP Foundation for Law Career Research and Education and the American Bar Foundation, *After the JD III: First Results of a National Study of Legal Careers*, 2014.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4: OECD Indicators*, <http://www.oecd.org/edu/Education-at-a-Glance-2014.pdf>.

<Abstract>

## Law School Lawyers in Korea, Who Are They?

Lee, Jae-Hyup<sup>\*</sup>

Rhee, June Woong<sup>\*\*</sup>

Hwang, Hyunjung<sup>\*\*\*</sup>

This paper analyzes the results of a comprehensive survey on the Korean legal profession which was conducted in 2014. About 1,020 responses from lawyers in active legal practice were collected through a random sampling out of 18,000 lawyers in Korea. In order to illustrate the changing aspects of the Korean legal landscape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new law school system which was established in 2009, three lawyer groups were compared: (1) the graduates of the new law school who entered the law school since 2009 (“law school group”), (2) the graduates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JRTI) who entered the JRTI since 2009 (“JRTI group”), and (3) the graduates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who entered the JRTI prior to 2009 (“career lawyer group”). The survey examined whether there are qualitative differences between the law school group and the JRTI group in terms of demographic compositions and background. It also addressed the law school group and the JRTI group lawyers’ assessment of their respective educational institutions, as well as their outlook for the opening of the Korean legal market since 2011. Finally, it investigated how the career lawyer group assessed the performance of the other two groups.

No statistical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law school group and the JRTI group in terms of the gender ratio and age. On the other hand, the law school group was more diverse than the JRTI group with regard to the university attended, the undergraduate major, and the work experience. No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

\*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First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cond author.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rd author.

the two groups on the household income, the profession and educational level of the parents. However, both groups' socio-economic backgrounds were consiste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career lawyer group.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about the law school was high among the law school group, and their evaluation of the curriculum and the coursework were positive. However the JRTI group assessed more positively than the law school group about the education related to practical skill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s well as the character education need to be strengthened in law school.

In general, the career lawyers evaluated the JRTI group more highly than the law school group. However, this result needs to be cautiously interpreted because the evaluation differs significantly based on the evaluators' age and their status within the employment and on the 'social distance' between the evaluator and those who are evaluated.

Keywords: law school,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legal profession, diversity

